

의안번호	2205801
의 퇴 인	박해철의원
회 답 일	2025. 1. 7.
추 계 번호	24B5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미세먼지 방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0억 7,400만원, 2030년 91억 8,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85억 8,900만원(연평균 177억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442억 9,500만원(연평균 88억 5,900만원) 이상
 - (지방비) 5년간 총 442억 9,500만원(연평균 88억 5,900만원) 이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3조제2항 신설(취약계층의 보호) -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17,074	17,390	17,712	18,040	18,373	88,589	17,718
- 국비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8,859
- 지방비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8,859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대상을 한정하여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

2.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 50%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제2항 신설(취약계층의 보호) -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3조제3항 신설 (취약계층의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제2 신설(취약계층의 보호) -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 (일부추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보급
2	안 제23조제3항 신설(취약계층의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관리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시설의 유형 및 단가가 상이하고, 지원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 21)에 따라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교육 등 컨설팅 지원 및 실내공기질 초과시설(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시설개선(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중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사업 중 취약계층 시설 지원>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주요내용</th><th>2024</th><th>2025</th></tr> </thead> <tbody> <tr> <td>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1633-322)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td><td>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개선 지원</td><td>1,350 (500개소 ×2.7백만원)</td><td>1,400 (550개소 ×2.5백만원)</td></tr> </tbody> </table>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또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4조의3²⁾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의 의무화하고 있음 ※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 2021.8. 참고	사업명	주요내용	2024	2025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1633-322)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개선 지원	1,350 (500개소 ×2.7백만원)	1,400 (550개소 ×2.5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4	2025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1633-322)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개선 지원	1,350 (500개소 ×2.7백만원)	1,400 (550개소 ×2.5백만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는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중복인원 제거)로 한정함

○ 개정안은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를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각 취약계층 간 구성원의 중복인원 제거에 한계가 있음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나. 취약계층의 보호—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안 제23조제2항 신설)

- 본 추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에게 미세먼지 방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보급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함
 -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19~2020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실시함⁴⁾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2639-308) 개요

<2019~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및 집행액	산출내역	사업수혜자
2019 (추경)	19,375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269만명 대상 84백만매 지급 - 1인당 평균 31매 배부 (평균 단가: 약 500원) (서울 30%, 기타 50%)	저소득층
2020	46,0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46만명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 * (산출근거) 2,460,000명 × 800원 × 50매 × 46.7% (서울 30%, 기타 5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각 연도

□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망

-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수(중복 제거)는 다음과 같음

[표 2] 기초생활수급자 수(중복 제거) 현황: 2021~2024년 11월

(단위: 명)

자격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월
기초생활수급자(B)	2,134,186	2,359,672	2,451,458	2,554,627	2,666,032
－ 생계급여	1,301,061	1,485,635	1,566,570	1,611,361	1,688,560
－ 주거급여	580,349	654,503	679,770	742,745	784,983
－ 의료급여	157,925	133,884	129,193	132,249	130,560
－ 교육급여	94,851	85,650	75,925	68,272	61,929

주: 1. 2020~2023년 12월 기준, 2024년은 11월 기준

2.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합산 수치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중복제거) (조회: 2025.1.3.)

-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비율은 5.2%('24년 11월 말 기준)인 것으로 가정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동 비율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11월
총인구(A)	51,836,239	51,769,539	51,672,569	51,712,619	51,751,065
기초생활수급자(B)	2,134,186	2,359,672	2,451,458	2,554,627	2,666,032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C=B/A)	4.1%	4.6%	4.7%	4.9%	5.2%

자료: 1. 보건복지부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중복제거)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2023.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총인구 수에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을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 산출

[표 4]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망: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인구(A, 명)	51,609,121	51,534,551	51,459,877	51,384,052	51,305,713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수 비율(B, %)	5.2%	5.2%	5.2%	5.2%	5.2%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망 (C=A×B, 명)	2,658,720	2,654,878	2,651,032	2,647,125	2,643,090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보건복지부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중복제거)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2023.12.

□ 보건용 마스크 보급수량 및 단가

- (1인당 보급수량)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를 참고하여 1인당 매년 25매의 미세먼지 방지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2021~2023년)간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나쁨 및 매우나쁨)⁵⁾ 일수는 연평균 23.0일
 -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및 나쁨일수 참고
 - 따라서 추계기간 동안 여유분 10%를 적용하여 1인당 25매(=23.0일×1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PM_{2.5}) 평균농도 및 나쁨 이상 일수: 2021~2023년

(단위: $\mu\text{g}/\text{m}^3$, 일)

구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초미세먼지(PM _{2.5})	평균농도	18	18	19	18.3
	나쁨이상 일수	23	17	29	23.0

주: 전국 평균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5)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 ₁₀	$\mu\text{g}/\text{m}^3$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 _{2.5}	$\mu\text{g}/\text{m}^3$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오존(O ₃)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주: PM₁₀과 PM_{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자료: 환경부고시 제2018-46호,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 (마스크 구입 단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실적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 1매당 251.8원(2025년 기준)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보건용 마스크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 보건용 마스크는 KF-94 이상 규격에 배송비 및 포장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 6] 공공 부문 보건용 마스크 구입 공고

(단위: 원, 매, 원/매)

공고일	공고기관	공고명	공고금액 (A)	매수 (B)	평균 단가 (C=A/B)
2023. 12. 28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용 마스크(KF94) 공동구매 계약(중증장애인생산품 소액수의견적입찰)	103,412,000	295,600	349.8
2023. 11. 22	조달청	2023년 비축 보건용 마스크 구매 2차(KF-94, 백색, 대형)	1,200,000,000	5,000,000	240.0
2023. 10. 2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보건용마스크 제조·구매	74,052,000	336,600	220.0
2023. 10.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 하반기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보급	37,588,000	174,828	215.0
2022. 11.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 하반기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보급	47,421,360	197,589	240.0
2022. 10. 25	서울교통공사	『2022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 승무분야 방역물품(KF94마스크) 구매(4분기)』	26,407,280	170,150	155.2
2021. 12. 28	경기도 고양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방역물품(마스크) 구입	286,560,000	955,200	300.0
2021. 11. 12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물품(보건용마스크 외 4종)구입 입찰공고	59,747,400	157,230	380.0
합계			1,835,188,040	7,287,197	251.8

주: 보건용 마스크는 KF-94 이상 규격에 배송비 및 포장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검색일: 2025.1.6.)

□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 50%로 가정

□ 추계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미세먼지 방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85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442억 9,500만원

○ (지방비) 5년간 총 442억 9,500만원

[표 7]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수 (A, 명)	2,658,720	2,654,878	2,651,032	2,647,125	2,643,090	—
1인당 보급수량(B, 매)	25	25	25	25	25	—
마스크 구입단가 (C, 원/매)	256.9	262.0	267.3	272.6	278.0	—
마스크 무상보급비용 (D=A×B×C, 백만원)	17,074	17,390	17,712	18,040	18,373	88,589
— 국비(D×50%)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 지방비 (D×50%)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주: 1.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
 2. 1인당 보급수량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나쁨 이상 일수(23.0일)에 여유분 10%를 적용하여 산출
 3. 보건용 마스크는 KF-94 이상 규격에 배송비 및 포장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4.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 50%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대상을 한정하여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및 나쁨일수

(환경부 제출자료)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 ₁₀	μg/m ³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 _{2.5}	μg/m ³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오존(O ₃)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주: PM₁₀과 PM_{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자료: 환경부고시 제2018-46호,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단위: μg/m³)

구분	초미세먼지(PM _{2.5}) 평균농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월
전국	26	25	23	23	19	18	18	19	16
수도권	27	26	24	25	21	21	19	21	18
서울	26	25	23	25	21	20	18	20	17
인천	26	25	22	23	19	20	19	22	19
경기	28	27	25	26	21	21	20	21	18
강원	28	26	23	21	17	15	15	15	13
세종	23	23	21	26	20	18	18	19	16
대전	21	21	22	22	18	16	17	18	14
충북	26	27	27	28	21	20	20	20	16
충남	26	23	21	26	21	21	20	21	18
경북	23	23	24	20	17	17	17	18	16
경남	25	23	20	19	16	15	15	16	13
부산	27	26	23	21	17	15	15	16	14
울산	23	25	23	20	17	15	16	18	15
대구	24	23	22	22	20	17	16	18	14
전북	31	29	25	26	20	19	19	20	16
전남	24	20	20	19	15	15	14	15	13
광주	23	24	24	23	18	18	17	17	14
제주	22	22	19	19	15	14	14	14	13

주: 1) 2024년 자료는 실시간 자료로 추후 확정과정 중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등록 자료 기준

□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

(단위: $\mu\text{g}/\text{m}^3$)

구분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이상 일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월
전국	62	60	59	47	26	23	17	29	12
수도권	74	78	72	66	46	37	37	41	21
서울	73	64	61	64	46	35	31	35	21
인천	77	65	49	52	27	36	31	40	23
경기	86	88	74	72	49	41	40	46	21
강원	86	72	47	41	19	12	12	14	7
세종	24	51	48	68	49	41	31	34	18
대전	40	32	45	48	14	15	20	26	8
충북	87	93	103	83	49	40	34	39	18
충남	84	52	50	64	46	42	31	39	20
경북	83	48	77	31	14	15	14	18	8
경남	51	34	39	20	8	6	7	8	6
부산	71	62	60	41	13	7	13	17	5
울산	58	71	73	42	8	10	15	16	11
대구	58	45	58	48	35	23	19	27	10
전북	123	98	87	60	36	29	27	34	14
전남	48	20	37	24	8	10	8	10	3
광주	51	65	66	48	22	26	15	20	9
제주	45	36	21	24	10	8	6	14	4

주: 1) 2024년 자료는 실시간 자료로 추후 확정과정 중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등록 자료 기준